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4일 12시 46분



목차

목차	2
취득 등록면허세	3
과세표준	3
취득세율	3
등록면허세 세율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**취득세**
- 지역개발공채

과세표준

-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(부가가치세 제외)
 - > 중고차량 :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(예외 :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.)
- 신규등록차량 :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(부가가치세 제외)
 - > 이전등록차량 :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함 (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적용)

※ 시가표준액이란

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·정원·적재정량·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

취득세율

구분	취득세 세율	비고
승용 자동차	70/1,000	
화물·승합자동차	50/1,000	
영업용	40/1,000	

※ 세액 = 취득가액(과세표준액) * 세율

등록면허세 세율

- 변경·말소등록 : 자동차 1대당 15,000원 (정액)
- 저당권설정 : 저당권 설정가격의 2/1,000

Yeosu Web Contents

